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은행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제3호 및 제15조제5항제3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등”을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 하고, 제15조제5항제1호·제2호, 제49조제2호마목, 제49조의2의 제목 및 제1호, <별표2-4>의 <표1> 제6호 중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하며, 제15조 중 제목 및 제54조의3제1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각각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등의 주식보유에 대한 승인 등” 및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제5조의2제2항 중 “영 제24조의7”을 “영 제24조의8”로 하고, 제5조의4제2항 중 “영 제24조의8”을 “영 제24조의9”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금융위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11조제5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른 청산은행에 해당하는 외국은행지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 처리한 자금(이하 이 호에서 “청산은행계정”이라 한다)을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은 이에서 제외한다.

제1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영 제4조의2제3항”을 “영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10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②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4조의2제3항·제4항에 따라 은행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16조제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중 “영 제20조의5”를 “영 제

20조의7”로 하고,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제4장, 제25조제1항,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29조의3, 제16조의5 및 제16조의6을 각각 제16조의5부터 제16조의7까지로 하고, 제16조의5제1항 중 “영 제20조의5”, 제16조의6제5항 중 “영 제20조의6”, 제16조의7제1항·제2항 중 “영 제20조의8”을 각각 “영 제20조의7”, “영 제20조의8”, “영 제20조의10”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별표2-9>를 삭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1개월”을 “30일”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을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금융위가 인정한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을기금의 한도 내에서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

가. 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

나. 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

다. 총자본비율 : 100분의 8

제27조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각처리한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및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의4(이익 제공 및 수령)를 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으로 하면서 종전 제29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9조의3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타점권을 교환결제전에 지급하는 행위
2.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

② 은행 직원은 감사통할책임자의 확인 및 영업점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취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부를 비치하여 그 내용을 기록 유지하고 그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 통장 또는 인감없이 예금을 지급하는 등 예금 편의취급
2. 거래처의 인감, 통장 등의 보관
3. 창구를 거치지 않은 예금의 입출금

제91조(금융사고예방)을 제29조의4(금융사고의 예방)으로 하면서 종전의 제1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하고, 제41조제3항제1호 중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를 “부실여신이”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및 주요 거래내역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4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
2. 금융위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에 대해 규정 제36조에 따

른 조치의 이행을 명령한 경우

3.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

②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49조제7호 중 “직접 관련된”을 “직접 관련된다고 감독원장이 정하는”으로 한다.

제49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으로 한다.

제50조제1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해당 은행의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고, 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
2.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

제51조제1항 중 “<별지1>에 따른”을 “감독원장이 정하는”으로 하고, <별지1>을 삭제한다.

제52조의4제2항 중 “연장할 수 있다”를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신청 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8조제1항 본문 중 “1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59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74조제1항전단 중 “영 제20조의3”을 “영 제20조의5”로 하고, 제74조제1항후단 및 제75조제1항·제2항 중 “영 제20조의4”을 “영 제20조의6”으로 한다.

제84조제3항제2호 중 “금융 관련법상”을 “금융관계법령에 따라”로 하고, 제3호를 삭제하면서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에 따라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

제88조제6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

가. 예금·적금

나. 상호부금

다. 「금융투자업규정」 제4-8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금전신탁

마.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

사.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

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

가.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

나.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

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마. 집합투자증권

제89조제8항제10호 및 제9장제3절을 각각 삭제하고, 제10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1조의2(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 감독원장은 은행의 각종 신청서 등 문서의 번역 및 공증, 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 문서의 기록·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별표2-5> I-1-가-3) 중 “양호하며 국제적인 신인도가 인정될 것”을 “양호하여 은행 이용자의 보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한다.

<별표2-8> 제1호가목 중 “금융기관(영 제13조제1항제37호, 제40호 및 제41호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관을 포함한다)”을 “영 제26조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하고, <별표2-9>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조의2, 제5조의4 및 제88조의 개정규정: 2016년 6월 30일
2. 제4장, 제29조의4제4항, 제59조의3, 제8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 2016년 8월 1일
3. 제2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17년 1월 1일

제2조(수협중앙회에 대한 특례) ① 수협중앙회는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3-22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15-40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는 그 적용시기를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② 수협중앙회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3-42호 은행업감독규정 부칙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1일 이후 최초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및 제32조제2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준(이하 이 조에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등”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2017년 12월 1일 이전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금융위는 그 적용시기를 단축 또는 연기할 수 있다.

제3조(자회사등 특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법률 제 1344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

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제4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⑤ (생략) ⑥ (생략) 1~2. (생략) 3. (본문 생략) 다만, <u>사모투자전문회사</u> 등이 주주인 경우 (이하 생략) ⑦~⑰ (생략)	제5조(은행업의 인가) ①~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본문 현행과 같음) -----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등----- ----- (이하 현행과 같음) ⑦~⑰ (현행과 같음)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생략) ② <u>영 제24조의7제4항</u> 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2-3>과 같다. ③~④ (생략)	제5조의2(합병 등의 인가) ① (현행과 같음) ② <u>영 제24조의8제4항</u> ----- ----- ----- ----- ③~④ (현행과 같음)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생략) ② <u>영 제24조의8제3항</u> 에 따라 금융위가 정하는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인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제5조의4(외국은행지점 신설 등의 인가 등) ① (생략) ② <u>영 제24조의9제3항</u> ----- ----- -----

현행	개정안
<p>2-5>와 같다.</p> <p>③~④ (생략)</p>	<p>-----.</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9조(자본금 감소의 신고) ① 금융위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한다.</p> <p>1. 자본금 감소의 불가피성이 인정될 것</p> <p>2. 예금자 및 채권자 보호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을 것</p> <p>② 감독원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결정에 필요한 추가자료의 제출을 은행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p> <p>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절차, 신고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p>	<p>제9조(자본금 감소의 승인) ① 은행이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 자본금의 감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2조제4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하는 승인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금융위가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감독원장이 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금융위가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 서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현행	개정안
한다.	
<p>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p> <p>①~③ (생략)</p> <p>⑤ (생략)</p> <p>1. (본문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 단서 신설 ></u></p> <p>2. (생략)</p>	<p>제11조(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p> <p>①~③ (현행과 같음)</p> <p>⑤ (현행과 같음)</p> <p>1. (본문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다만, 법 제35조에 따른 동일 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 도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외국 환거래규정 제10-21조제1항에 따른 청산은행에 해당하는 외 국은행지점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 계 처리한 자금(이하 이 호에 서 “청산은행계정”이라 한다) 을 그의 본점 또는 국외지점에 대여한 자금은 이에서 제외한 다.</u></p> <p>2. (현행과 같음)</p>
<p>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 고) ① (생략)</p> <p>② 영 제4조의2제3항 및 제4항에</p>	<p>제14조(동일인의 주식보유상황보 고) ① (현행과 같음)</p> <p>② 법 제15조제2항 및 영 제4조의</p>

현행	개정안
<p>따라 은행의 주식보유상황 또는 주식보유비율의 변동상황을 보고 하고자 하는 자는 감독원장이 정 하는 서식에 따른 보고서 및 첨부 서류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③ 영 제4조의2제3항에서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날을 말한다.</p> <p>1~3. (생략)</p>	<p>2제3항·제4항에----- -----보고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법 제16조제 2항제1호가목 및 제2호가목에 따 라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 주식의 보유사실을 보고하고자 하는 자- ----- -----.</p> <p>③ 영 제4조의2제3항 및 영 제10조 의2제1항----- ----- -----.</p> <p>1~3. (현행과 같음)</p>
<p>제15조(사모투자전문회사 <u>주식보</u> <u>유 승인 등</u>)</p> <p>①~④ (생략) ⑤ (본문 생략)</p> <p>1. <u>사모투자전문회사</u>의 업무집행 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u>사</u> <u>모투자전문회사</u> 및 그 사원 현 황</p>	<p>제15조(경영참여형 <u>사모집합투자</u> <u>기구</u>등의 <u>주식보유에 대한 승인</u> <u>등</u>)</p> <p>①~④ (현행과 같음) ⑤ (본문 현행과 같음)</p> <p>1.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 <u>경영</u> <u>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 -----</p>

현 행	개 정 안
<p>2. <u>사모투자전문회사</u>의 업무집행 사원이 사원으로 있는 다른 사 <u>모투자전문회사</u>가 주주 또는 사 원으로 있는 투자목적회사 및 그 주주 또는 사원 현황</p> <p>3. <u>사모투자전문회사등</u>의 투자 내 역</p>	<p>2.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 경영 <u>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 -----</p> <p>3.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 <u>등</u>-----</p>
<p>제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u>영 제20조의5제4항제5호</u>의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 한다.</p> <p>1~6. (생략)</p> <p>② 은행은 <u>영 제20조의5제4항</u>에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 는 계획을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 사유에 해당하 게 된 사실을 안 날을 말한다)부 터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에게</p>	<p>16조의4(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등) ① <u>영 제20조의7제4항제5호</u> ----- ----- ----- ----- -----.</p> <p>1~6. (현행과 같음)</p> <p>② ----- <u>영 제20조의7제4항</u>----- ----- ----- ----- ----- -----</p>

현 행	개 정 안
<p>여 공시하여야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p> <p>⑥ 제5항에 따른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공시 양식은 감독원장이 정한다.</p>
<p>제29조의3(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은행이 영 제20조의5제8항에 따라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자(이 조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한다)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추어 그 은행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교환 또는 신용공여(이 조에서 ‘자산의 무상양도등’이라 한다)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p> <p>1~6. (생략)</p> <p>②~③ (생략)</p>	<p>제16조의5(자산의 무상양도 등에 관한 경영지도기준) ① ----- 영 제20조의7제8항-----</p> <p>-----.</p> <p>1~6. (현행과 같음)</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5(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의 취득한도 등)</p> <p>①~④ (생략)</p> <p>⑤ 영 제20조의6제5항에서 "금융</p>	<p>제16조의6(대주주가 발행한 지분 증권의 취득한도 등)</p> <p>①~④ (현행과 같음)</p> <p>⑤ 영 제20조의8제5항-----</p>

현행	개정안
<p>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하며, 대주주가 발행한 지분증권 취득현황을 발행회사별로 구분하여 공시하여야 한다.</p> <p>1~4. (생략)</p>	<p>----- ----- ----- ----- -----.</p> <p>1~4. (현행과 같음)</p>
<p>제16조의6(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제20조의8제1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산건전성분류기준에 따라 그 대주주의 신용위험을 평가한 결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하로 분류된 경우”라 함은 제27조에 의한 자산건전성분류 결과 “고정”이하로 분류된 경우를 말한다.</p> <p>② 은행은 그 대주주가 영 제20조의8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6조의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① 영 제20조의10제1항제2호 -----</p> <p>-----.</p> <p>② ----- 영 제20조의10제1항 -----</p> <p>----- ----- ----- ----- -----.</p>

현 행	개 정 안
<u>제4장 지배구조</u>	<u>제4장 < 삭제 ></u>
제20조(임원의 자격기준 적합여부 확인) (생략)	제20조 < 삭제 >
제23조(이사회 운영 등) (생략)	제23조 < 삭제 >
제23조의2(준법감시인 임면) (생략)	제23조의2 < 삭제 >
제24조(지배구조내부규범) (생략)	제24조 < 삭제 >
<p>제25조(부수업무) ① 영 제18조제1항제1호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임대하고자 하는 부분이 직접 사용면적의 9배 이내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시계획, 도시미관 등의 이유로 일정층수 이상의 신축을 조건으로 건축허가하는 행정관청의 건축행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건축된 경우 2. 이미 소유 또는 임차하여 사용하는 부동산 중 자산 인수, 	제25조(부수업무) ① < 삭제 >

현행	개정안
<p>합병 및 경영 합리화를 위한 영업장 폐쇄·축소 등으로 인하여 잉여부동산이 발생한 경우로서 매각 또는 임차계약 해지 시까지 임대하는 경우</p> <p>②~③ (생략)</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25조의2(겸영업무) ① 영 제18 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금융위 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파생결합 증권"은 금적립계좌 및 은적립계 좌를 말한다.</p> <p>② 영 제18조의2제2항제18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 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항에 따른 자산구성형 개인종합자산관 리계약에 대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7항 에 따른 투자일임업을 말한다.</p> <p>③ 영 제18조의2제4항제8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p>	<p>제25조의2(겸영업무)</p> <p>① < 삭제 ></p> <p>② < 삭제 ></p> <p>③ < 삭제 ></p>

현행	개정안
<p>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p> <p>1. <u>신용정보서비스</u></p> <p>2. <u>상법 제480조의2에 따른 사채관리회사의 업무</u></p> <p>3. <u>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중소기업중앙회가 당해 공제의 약관에 대해 금융감독원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 한한다)의 판매대행</u></p> <p>④ (생략)</p>	<p>④ (현행과 동일)</p>
<p>제26조(경영지도비율)</p> <p>① (생략)</p> <p>1. <u>보통주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및 총자본비율에 관하여 <별표2-9>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u></p> <p>2. <u>향후 1개월간 순현금유출액에 대한 고유동성자산의 비율(이</u></p>	<p>제26조(경영지도비율)</p> <p>① (현행과 같음)</p> <p>1. <u>자본비율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최소 준수비율</u> 가. <u>보통주자본비율 : 100분의 4.5</u> 나. <u>기본자본비율 : 100분의 6</u> 다. <u>총자본비율 : 100분의 8</u></p> <p>2. --- <u>30일간</u> -----</p>

현 행	개 정 안
<p>하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상(외국 은행지점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이상). 다만, 금융위가 급격한 경제 여건의 변화 또는 국민생활 안정 목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는 경우 100분의 100 미만에서 금융위가 정하는 비율 이상</p>	<p>----- ----- ----- ----- ----- ----- ----- ----- -----</p>
<p>3. 원화예수금(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한다)과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 발행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행만기 5년 이상의 이중상환청구권부채권 잔액(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 원화로 운용되는 경우에 한정하며, 그 자금이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원화예수금의 100분의 1로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원화대출금</p>	<p>3. -----(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 영 제26조제5호에 따라 금융위가 인정한 외국은행지점의 영업기금은 제11조제4항에서 정한 을기금의 한도 내에서 포함한다)----- ----- ----- ----- ----- ----- ----- ----- -----</p>

현 행	개 정 안
<p>(다음 각 목의 대출을 제외한 다) 비율(이하 "원화예대출"이라 한다) : 100분의 100 이하 가~다. (생략)</p> <p>②~⑤ (생략)</p> <p>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p> <p>①~⑦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 ----- -----</p> <p>가~다. (현행과 같음)</p> <p>②~⑤ (현행과 같음)</p> <p>제27조(자산건전성분류 등)</p> <p>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은행의 국외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감독원장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7항에 따라 감독원장이 대손상각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따라 상각 처리한 경우 은행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기간 및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91조의2(금지사항 등) ① 은행 임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제29조의3(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등) ① 영 제20조의2제5호에서 “그 밖에 은행의 건전한 운영 또는 신용질서를 해치는 행위로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p>

현행	개정안
<p>1. 법 제27조, 법 제27조의2 및 법 제28조에 따른 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통상적인 수준을 초과하는 이익제공이나 이익제공을 가장하는 등 부당한 방법을 통한 과당경쟁 행위</p>	<p>< 삭제 ></p>
<p>2. 사고발생 가능성이 있는 타점권(他店券)을 교환결제전에 지급하는 행위</p>	<p>1. (현행 제1호와 같음)</p>
<p>3. 자기앞수표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선발행(先發行)하거나 무자원입금거래(無資源入金去來)를 하는 행위</p>	<p>< 삭제 ></p>
<p>4. 비정상적인 양도성예금증서 그 밖에 채무증서의 발행을 통한 예금유치행위</p>	<p>2. (현행 제4호와 같음)</p>
<p>5.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과 사적으로 금전 등의 대출·보증·인수·차입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등의 행위</p>	<p>< 삭제 ></p>

현 행	개 정 안
<p>③ 은행은 제2항제2호에 따른 인감, 통장 등의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p>	<p><u>< 삭제 ></u></p>
<p>제29조의4(이익 제공 및 수령) ① (생략) ② (생략)</p>	<p>③ (현행 제29조의4제1항과 같음) ④ (현행 제29조의4제2항과 같음)</p>
<p><u>제3절 금융사고 예방</u> 제91조(금융사고예방) ① 은행은 자체실정에 맞는 금융사고 예방대책 및 내부기준을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8. (생략) ②~③ (생략) ④ 은행은 국외지점 및 현지법인별로 준법감시 등 내부통제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내부통제담당직원”이라고 한다)을 임명하여야 하며, 내부통제담당직원은 내부통제직무 이외의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다만, 국외지점 또는 현지법</p>	<p><u>제3절 < 삭제 ></u> 제29조의4(금융사고의 예방) ① <u>< 삭제 ></u> ②~③ (현행과 같음) ④ <u>< 삭제 ></u></p>

현행	개정안
<p>인의 규모 및 인력구조 등으로 여타 직무 겸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낮은 직무에 한하여 겸직토록 운영할 수 있다.</p> <p>⑤~⑥ (생략)</p>	<p>⑤~⑥ (현행과 같음)</p>
<p>제41조(경영공시)</p> <p>①~② (생략)</p> <p>③ (생략)</p> <p>1. 부실여신 또는 금융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p> <p>2~10. (생략)</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④~⑥ (생략)</p>	<p>제41조(경영공시)</p> <p>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1. 부실여신이 발생한 경우</p> <p>2~10. (현행과 같음)</p> <p>1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사외이사로 선임된 경우에 한한다)를 추천한 주주 및 임원에 대한 신용공여 현황 및 주요 거래내역</p> <p>④~⑥ (현행과 같음)</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채권발행</u></p> <p>제47조(제재) ① 은행이 영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채등(이하 "금융</p>	<p style="text-align: center;"><u>제4절 <삭제></u></p> <p>제47조 <삭제></p>

현행	개정안
<p>채"라 한다)을 발행한 경우 금융위는 해당 은행에 대해 채권발행의 일정기간 정지, 발행한도의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p>② 은행이 영 제19조를 위반하여 사채 등을 발행한 경우 금융위는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조치 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 설 ></u></p>	<p>제47조의2(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등) ① 영 제19조제7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이 조건부자본증권의 상각 또는 보통주 전환 없이는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 금산법 제2조제2항 또는 「예금자보호법」 제2조제5호에</p>

현행	개정안
	<p>다른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거나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3조에 따라 공적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다만, 수출입은행의 경우에는 금융위가 생존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제17조의13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를 말한다.</p> <p>2. 금융위가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에 대해 규정 제36조에 따른 조치의 이행을 명령한 경우</p> <p>3.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한 은행의 경영성과 또는 재무구조 등과 관련하여 발행할 당시 미리 정한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게 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② 그 밖에 조건부자본증권의 예정사유, 발행조건 및 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라 감독원장이 정할 수 있다.</p>
<p>제48조(보고) ① 은행은 금융채 발행실적을 감독원장이 정하는 절차 및 서식에 따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감독원장은 매년 6월말, 12월말 기준으로 은행의 금융채 발행 실적 등을 금융위에 보고한다.</p>	<p>제48조 < 삭제 ></p>
<p>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법 제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p> <p>1. (생략)</p> <p>2. (생략)</p> <p>가~라. (생략)</p> <p>마. <u>사모투자전문회사</u>의 지분</p>	<p>제49조(자회사등의 업종) -----</p> <p>-----</p> <p>-----</p> <p>-----</p> <p>-----</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가~라. (현행과 같음)</p> <p>마. <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u></p>

현 행	개 정 안
<p>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의 업무</p> <p>2의2~6. (생략)</p> <p>7. 은행업무의 수행과 직접 관련된 금융전산업, 금융연구업</p> <p>8~14. (생략)</p>	<p><u>기구</u>-----</p> <p>-----</p> <p>2의2~6. (현행과 같음)</p> <p>7. ----- <u>관</u> <u>련된다고</u> <u>감독원장이</u> <u>정하는</u> -----</p> <p>8~14. (현행과 같음)</p>
<p>제49조의2(<u>사모투자전문회사</u>에 대한 특례) (본문 생략)</p> <p>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u>사모투자전문회사</u></p> <p>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u>신기술사업투자조합</u>(「자본시</p>	<p>제49조의2(<u>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u>에 대한 특례) (본문 현행과 같음)</p> <p>1. ----- ----- <u>경영참여형</u> <u>사모집합투자기구</u></p> <p>2. ----- ----- <u>「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u> ----- -----</p> <p>3. ----- ----- <u>「자본시</u></p>

현 행	개 정 안
<p>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69조제4항의 내용을 규약에 반영하고 준수하는 경우로 한정한다)</p>	<p>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 -----</p> <p>-----</p> <p>-----</p> <p>4. -----</p> <p>-----</p> <p>-----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11제4항 -----</p> <p>-----</p> <p>-----</p>
<p>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p> <p>1. 해당 은행의 경영상태는 제33조에 따른 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또는 2등급이어야 하고,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p>	<p>제50조(자회사등 출자의 요건) ① -----</p> <p>-----</p> <p>----- 다음 각 호를 -----</p> <p>-----.</p> <p>1. 해당 은행의 -----</p> <p>----- 2등급이고,</p> <p>전년말 현재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영지도비율을 유지하고 있을 것</p>

현행	개정안
<p><u>가~다. (생략)</u></p> <p>2. 해당 은행이 이미 출자한 자회사등(제51조의 규정에 의해 승인을 받은 자회사등은 제외한다)의 <u>경영상태는 최근 회계연도의 자회사등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 내지 3등급이어야 한다.</u></p> <p>②~③ (생략)</p>	<p><u>< 삭제 ></u></p> <p>2. ----- ----- ----- ----- <u>최근 경영실태평가 결과가 1등급부터 3등급까지일 것</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p> <p>① 은행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49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가 아닌 회사(이하 “비금융회사”라 한다)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고자하는 경우(발행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한 은행이 해당 회사가 발행한 지분증권을 추가로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u><별지1>에 따른</u></p>	<p>제51조(비금융자회사 출자승인)</p> <p>① ----- ----- ----- ----- ----- ----- ----- ----- ----- ----- ----- <u>감독원장이 정하는</u></p>

현행	개정안
<p>1.~2. (생략) ③ (생략)</p>	<p>시 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p>
<p>제54조의3(긴급한 사유) (생략)</p> <p>1.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투자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의 해산 등에 따른 현물수령으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p> <p>2~3. (생략)</p>	<p>제54조의3(긴급한 사유) (현행과 같음)</p> <p>1.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 ----- -----</p> <p>2~3. (현행과 같음)</p>
<p>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은행은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 중 법에 의하여 보유가 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하 "비업무용 자산"이라 한다)을 법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공</p>	<p>제58조(비업무용자산의 처분) ① ----- ----- ----- ----- ----- ----- ----- 3년 -----</p>

현행	개정안
<p>매유찰 및 공매보류의 사유로 비 업무용자산 처분연기보고를 하였 을 경우에는 연기보고일 이후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p> <p>② <u>비업무용자산</u>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는 때에는 감독원장 이 정한다.</p> <p>③~④ (생략)</p>	<p>----- ----- ----- -----.</p> <p>② <삭제></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59조의3(보험모집의 특례)</p>	<p>제59조의3 <삭제></p>
<p>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① <u>영 제20조의3제1항제3호</u>에 따라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인정받 고자 하는 은행은 감독원장을 경 유하여 금융위에 그 인정을 신청 하여야 한다. 다만, 당좌대출 등 이미 약정한 한도범위 내에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 의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p> <p>② <u>영 제20조의3제2항제5호</u>에서 "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p>	<p>제73조(신용공여한도의 초과사유 등) ① <u>영 제20조의5제1항제3호</u></p> <p>----- ----- ----- ----- ----- ----- -----.</p> <p>② <u>영 제20조의5제2항제5호</u>----- ----- -----</p>

현행	개정안
<p>한도 초과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그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p>	<p>----- ----- -----.</p>
<p>제84조(보고) ①~② (생략)</p> <p>③ (본문 생략)</p> <p>1. (생략)</p> <p>2. <u>금융 관련법상</u> 인가·허가 및 등록 등을 받은 사항을 실행한 경우</p> <p>3. <u>영 제12조에 따라 임원의 자격요건이 적용되는 자의 변경이 있는 때</u></p> <p style="text-align: center;"><u>< 신설 ></u></p> <p>④~⑤ (생략)</p>	<p>제84조(보고)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본문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u>금융관계법령에 따라</u>----- ----- -----</p> <p>3. < 삭제 ></p> <p>4. <u>법 제33조에 따라 금융채를 발행한 경우</u></p> <p>④~⑤ (현행과 같음)</p>
<p>제88조(구속행위 금지)</p> <p>①~⑤ (생략)</p> <p>⑥ (본문 생략)</p> <p>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 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p>	<p>제88조(구속행위 금지)</p> <p>①~⑤ (현행과 같음)</p> <p>⑥ (본문 현행과 같음)</p> <p>1.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출된</u></p>

현 행	개 정 안
<p>100분의 1을 초과하는 <u>예금·적금, 상호부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 및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을 판매하는 행위</u></p> <p>가. 「금융투자업규정」 제</p>	<p><u>월수입금액이 여신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 판매하는 행위</u></p> <p>가. 예금·적금</p> <p>나. 상호부금</p> <p>다. (현행 가목과 같음)</p> <p>라. (현행 나목과 같음)</p> <p>마. 원리금 상환이 보장되는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이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 한다)</p> <p>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른 소기업·소상공인공제(이하 "소기업·소상공인공제"라 한다)</p> <p>사. 「상법」 제65조에 따른 유가증권(양도성예금증서, 금융채, 환매조건부채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선불카</p>

현행	개정안
<p>4-82조제1항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전신탁</p> <p>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각 호의 운용방법으로만 운용하는 금전신탁</p>	<p>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상품권 등을 포함하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상품권을 제외하고, 이하 이 조에서 "유가증권"이라 한다)</p>
<p>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금전신탁, 공제(소기업·소상공인공제를 제외한다), 보험 및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p>	<p>2. 여신실행일 전후 1월 이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판매하는 행위</p> <p>가. 제1호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전신탁</p> <p>나. 제1호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p> <p>다. 제1호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제</p> <p>라.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p> <p>마. 집합투자증권</p>

현 행	개 정 안
⑦~⑨ (생략)	⑦~⑨ (현행과 같음)
<p>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⑦ (생략)</p> <p>⑧ (생략)</p> <p>1~9. (생략)</p> <p>10.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외파생상품거래(제85조에 따른 금융거래약관을 이용한 거래를 제외한다)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행위</p> <p>가~사. (생략)</p> <p>⑨ (생략)</p>	<p>제89조(금융거래조건의 공시 및 설명 등) ①~⑦ (현행과 같음)</p> <p>⑧ (현행과 같음)</p> <p>1~9. (현행과 같음)</p> <p>10. < 삭제 ></p> <p>⑨ (현행과 같음)</p>
<p><신 설></p>	<p>제101조의2(제출문서의 번역 및 공증 등) 감독원장은 은행의 각종 신청서 등 문서의 번역 및 공증, 업무와 관련된 서류 등 문서의 기록·유지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p>